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조및 동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되고, 부위원장은 보건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4. 기타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② 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도 관내로 이주한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의약계장이 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